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9나37921 판결 [점유회수]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9나3792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2 선고 2018가단518237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용섭

피고, 피항소인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정

2. C

3. D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정

담당변호사 민영리

변론 종결2019. 12. 18.

판결 선고2020. 1. 15.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2. 선고 2018가단5182378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은 제1심판결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항, 제2항, 제4항 기재 각 건물을, 피고 C, D는 제1심판결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3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공권력을 빌려서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였으므로 부동산인도명령(대전지방법원 2016라14)의 위법성이 확정된 2018. 6. 28.(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소송의 판결 확정일)을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1,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에 의하여가 아니라 자진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태안

판사성원제

판사김지영